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국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미국, 영국, 호주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김혜진

글로벌 디지털 범죄 정책 연구소 대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on Child·Youth Damages due to Digital Sexual Abuse based on Foreign Cases -With a Focus on the Support System of the U.S., U.K., and Australia-

Hyejin Kim

Global Digital Sexual Crime Policy Research Institute, CEO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해외 주요국 지원 사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with the recovery methods and support systems for harm caused by digital sexual assault, based on cases in the U.S., U.K., and Australi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e implications on problem solving related to digital sexual assault based on the legislation and systems of advanced foreign nations. The analytical method behind this study is the investigation of research literature. The reference materials are from judicial precedents, comparative analysis on media data, experts' advisory conferences, study forums, foreign theses, and documents on law and policy. As shown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need to examine digital sexual exploitation and seek countermeasures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after comparing foreign cases to determine the best protections and support systems. As digital sexual content can spread indefinitely, we certainly recognize the inherent difference between digital sexual crimes and offline sexual crimes. Thus, each case needs to be professionally categorized and an appropriate punishment must be suggested that satisfies the victims' needs. Ultimately,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suggest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digital sexual crimes.

Key Words : Telegram Sexual Exploitation Case, Digital Sexual Assault Victims, Features of Digital Sexual Assault, Support Cases of Foreign Leading Countries

\*Corresponding Author : Hyejin Kim(rossojk@gmail.com)

Received September 14,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September 28,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 1. 서론

아동과 성인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영상물을 거래해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이 체포된 후 범죄에 가담한 이들 역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의 온상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성인사이트 소라넷이 폐지된 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제2, 제3의 소라넷이 생겨났고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인터넷을 통해 무제한 전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즉, 피해자의 불법 영상물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재유포 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의 성폭력 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에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제도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국가가 주도하는 영상 기록물 삭제 지원'은 '성폭력 처벌법 피해자'에 한정되어 이뤄지고 있어 사각지대에서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1].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개팅 앱의 특성상 성별과 연령 등 개인 정보를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닉네임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앱들이 많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잔혹성이 오프라인 성폭력 수위보다 더 심각한 상태이다. 가입이 간편한 앱들인 경우 성인 인증 자체를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인 인증 절차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앱들도 많다. 특히 텔레그램 같은 앱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대화 저장 및 화면 캡처가 불가능한 데다 채팅 방에서 로그아웃 하는 순간에 모든 대화가 삭제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개인 정보는 물론 성매매 이력과 성매매를 알선한 이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앱 이용자가 채팅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포인트 수익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포인트 자체가 채팅을 하는 사람에게도 일부 지급이 되고 있어 이 포인트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더 자극적으로 대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현재는 게시 관형 채팅에서 영상, 보이스톡 채팅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앱 노출 횟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 운영의 일환으로 같은 회사에서 제작한 여러 개의 동일한 카테고리에 앱을 유통시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앱 이름을 자주 바꾸는 등의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수사에

혼돈을 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채팅앱에는 성매매에 대한 경고 문구 및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배너가 게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심지어 아동이나 청소년이 스스로 채팅에 응했을 때 성매매로 유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화 상대를 양산하는 '그루밍' 수법을 이용해 이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고 있으며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폭력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성인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할 경우 그루밍 수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방법과 해결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	2017	2018	2019	Feb. 2020	Total
The number of cases	1,262	603	1,172	756	113	3,906
The number of arrested criminals	957	543	1,006	886	121	3,513

Fig. 1. Statistical chart on Apprehensions of CSE (Child Sexual Exploitation) cases [1]

또한 아동 성착취 피해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해 주요 각국(미국, 영국, 호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원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피해 회복 및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방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 관련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국내 자료와 해외 주요국의 정책과 관련된 문헌 자료, 그리고 주요 정부 기관 및 시민 단체,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최근 정책 자료 및 언론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기존 자료에 인용된 법안과 정책 제도에 대한 내용을 해외 국가의 정책 및 개정에 따른 변화 과정과 비교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 2. 이론적 배경

### 2.1 국내 아동 디지털 성착취물 현황

경찰청에서 조사한 <2016~2020.2 ‘아동성착취물’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동 성착취 범죄’가 3,906건이 발생했으며, 3,51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현재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또는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까지 ‘아동성착취범죄’로 간주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있는 것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유형이 증가했다’고 밝혔다[1].

Year	The Total Number of Counsels on Sexual Assault	The Number of Counsels on Digital Sexual Assault	Rate Over the Total Base
2013	1,418	82	5.8%
2014	1,450	75	5.2%
2015	1,308	90	6.9%
2016	1,353	94	6.9%
2017	1,260	113	8.9%

Fig. 2. Statistical chart on Counsels on Digital Sexual Assault at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

과거 아동(13세 미만)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 731명에서 2015년 920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733명, 2017년 73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강간과 강제추행을 중심으로 연도별 추세를 도식화해 살펴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한 2011년 541명에서 2015년 805명까지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584명, 2016년에는 646명으로 감소하였다. 강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1~190명 안팎으로 매년 증감을 반복하던 중 2013년 이후 2014년 141명, 2015년 115명, 2016년 87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12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율을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 모두 강간보다 강제추행의 피해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각각의 범죄 유형에 따른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

제추행은 강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에서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과 강제추행을 포함 범죄에서는 10% 안팎으로 증가·감소 추세가 반복되었다. 단, 지난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강간 발생 비율이 16.5%로 소폭 증가했으며 강제추행 비율의 경우 79.7%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강제추행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비율이 10%내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강제추행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도 강제추행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강간이 25.0%, 강제추행은 71.9%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사강간의 경우 아동·청소년 모두 전체 피해에서 3%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디지털 성폭력(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포함) 상담 건수는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1,260건 중 11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상담 건에서 8.9%에 해당된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중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상담 건수는 5.8%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8.9%로 약 1.5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Fig. 2에 나타난 한국성폭력상담소 디지털 성폭력 상담 현황을 보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 점을 유의미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2].

또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서 자주 쓰이는 수법으로 가해자들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가 자행되는 주 경로는 스마트 앱을 비롯한 채팅앱과 인터넷 채팅 등이며 1:1채팅을 통해 가해자들과 조건 만남을 하는 것이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매매 수법이다. 이 경우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가해자들의 만남 제안에 쉽게 유인되며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에 갇혀 가해자들이 행하는 잔인한 그루밍 수법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에 비례해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커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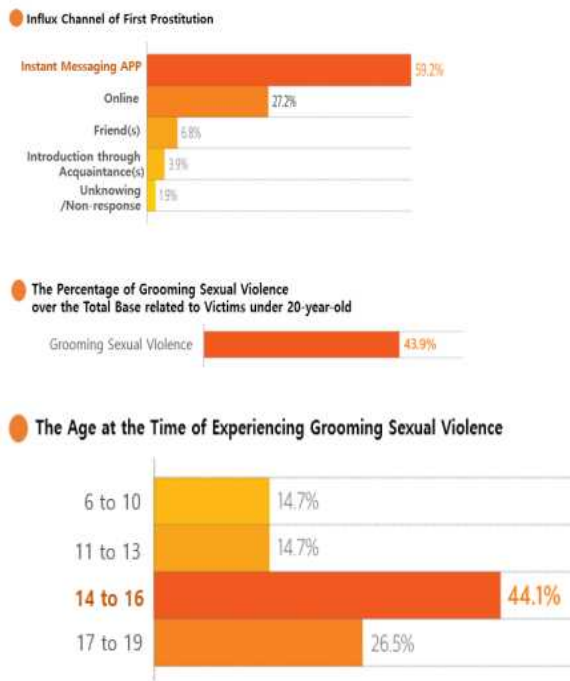


Fig. 3. Influx Channel of First Prostitution and The Percentage of Grooming Sexual Violence [3,4]

## 2.2 피해자 관점에서의 용어변경의 필요성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성 구체적인 용어 사용부터가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몰카라는 비속어 대신에 ‘비동의 불법촬영’이라는 피해자의 권리가 담겨져 있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는 ‘비동의 성적 착취물’이 맞다고 생각한다. 호주에서는 이미 ‘이미지 기반 성적학대(image-based sexual abuse)’라는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고 본다. 가해자들의 행위를 올바르게 표현을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의 본질을 전달해야 하는 의미에서도 용어변경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앞으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처벌법으로 정해진 범죄를 의미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범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성폭력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보다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온라인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 성폭력이 단순한 음란물로 취급되는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자행된 성폭력과 관련해 ‘몰카’ 대신 ‘불법촬영’ 또는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비동의 성적 촬영물’로 개선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5].

## 3. 아동 성폭력이 신체 및 심리에 미치는 영향

### 3.1 아동 성학대의 정신과적 후유증

#### 3.1.1 영유아기 학대경험이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

소아성폭력(child sexual abuse)이란 성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checter & Roger, 1976). 지난 2002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기에 성적인 피해를 입는 여성의 경우 유병률이 평생에 걸쳐 20%인 반면 남자는 5~10% 수준이며 이것은 인종과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한편,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는 뇌의 초기 발달시 필요로 하는 자극이 부족해짐으로써 뇌 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 학대는 이후 애정 어린 경험이 필요한 시기에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반복함으로써 뇌의 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의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경험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학대는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발달에 막대한 손상을 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정서적 학대 및 신체 학대 혹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성학대 등은 가정 특성상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아동이 학대에 병적으로 적응해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학대의 결과로 PTSD가 반드시 수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오랜기간 동안 아동에게 행해진 학대는 조건반사적 행동 문제인 PTSD보다는 아동의 심리적, 생물학적 조절기능 전반에 걸쳐 장애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성인이 겪는 폭력의 후유증 정도가 아닌 근본적 차원에서의 기능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단, 일회성이긴 하지만 명백하게 외상적

폭력을 당한 경우 PTSD가 발병할 가능성은 있다. 한편, Glaser D(2000,2003)은 4세 이하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PTSD 진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7-8]. 그에 따르면 아동 학대 및 방치는 아동의 뇌 발달을 포함한 모든 발달 및 기능에 잠재적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제공한다(Glaser,2000). 또한 성적이거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자행된 유린이 원인으로 작용,PSE(Present State Examination)에 나타난 성인의 정신 건강 문제와 독립적인 연관성이 우울증과 불안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한된 범위 한도 내에서, 아동 학대의 또 다른 형태로서 개인 및 사회적 문제에 해당되는 학대 외에도 비종교적인 특성을 띤 사이코패스 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인의 섭식 장애는 보고된 아동기 이후 더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8].

한편, 아동의 뇌는, 생후 첫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성장하며 이 시기에는 엄청난 증식 및 액술, 수상 돌기 등의 과잉 생산이 나타난다. 또한 이 과정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시기에 생성된 모든 시냅스 연결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용 부족으로 인해 '제거(pruned)'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

이와 관련해 가소성 혹은 변화 가능성이 살아 있는 동안 시냅스 연결이 유지될지 여부는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따라 환경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쟁 시스템이 작동해 어떤 뉴런과 신경 연결이 살아남을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시냅스 연결은 점차 사라진다. 진행성 뉴런의 성숙 및 시냅스 연결 설정은 영아의 기능적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 반영된다. 즉, 서로 연결되는 뉴런끼리 서로 이어진다[11]. 진행성 신경의 성숙 및 시냅스 연결 설정은 영아의 기능이 성숙하면서 반영된다. 따라서 아동이 겪은 특이한 경험이 두뇌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특정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 시기에 겪은 해로운 경험은 아동의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발달에도 민감한 시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기 발달 단계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기 는 하지만, 이후 특정 시점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의 경우에도 육체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된 유아기를 보낸다는 것은 영유아와 원만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이러한 상호 작용이 부족할 경우 시냅스의 연결 및 제거에 영향을 주며 뇌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 동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극이 결

여되고 상호 작용에 실패할 경우 영유아의 인지능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어린 아이가 특정한 상호 작용에 노출될 때 전두엽의 비대칭 구조 및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학습 및 새로운 정보의 습득에 관여하는 신경 가소성 과정이 어린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된 이후까지 지속되면서 환경적 입력과 유기체의 요구에 따라 뇌의 구조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조절된다. 단, 성인 뇌의 가소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더 이상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효능을 조절함으로써 작동하는 특징을 보인다.[9]

양육자는 영아의 행동, 사물과 현상을 인지하는 방식, 감정을 조절하는 법 등과 관련해 유아가 좌절감을 느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또한 영아는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 충동을 조절 및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감정 조절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계획에 대해 배우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도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이 가운데 역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태어난 첫 해 말부터 전두엽의 포화 과정이 필요하다. 전두엽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습관적으로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각성된 상황에서 무분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규제하는 능력을 포함, 정서 표현 및 자기 조절에 관여하는 신체기관이며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균형 잡힌 성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민감한 기간 동안 양육자와의 상호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10].

발달 초기 산모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생물학적 행동 체계에 따른다. 이때 반응하는 엄마의 얼굴을 인지한 유아의 뇌에서는 뇌간 도파민성혈관이 활성화되어 상당한 수준의 토착성 아편물이 발생한다. 이러한 엔도르핀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생화학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애착과 관련이 있다[11]. 또한 즐거운 상태에서 느끼는 흥분은 공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양육자의 역할은 심한 불쾌감 또는 두려움, 좌절감이 뒤따를 수 있는 흥분 상태를 조절해 주는 것으로 유아를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견딜 수 있는 감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10-14]. 4~6세 사이에 학대를 겪은 경험이 있지만, 현재에는 특별히 기능적 장애를 보이지 않는 아동들과 그 대조군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상황에서 이들이 보이는 코티졸 반응을 타액을 매개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자의 경우가 대조군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코티졸 반응에서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취약한



상태의 아동들의 뇌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동시에 힘든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만성적으로 습관화되어 특별히 생리학적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성학대를 당한 여아를 대상으로 5년 간 종적을 연구한 결과 CRH(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에 대한 ACTH(adrenocorticotropic hormone)의 반응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대상 여아들은 과거 우울증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검사 당시의 상태만 보면 더 이상 우울 감을 느끼거나 다른 정신 병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15]. 이는 과거 학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당시 CRH를 과도하게 분비시킴으로써 적응했고, 이로 인해 하향 조절(down regulation)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외부 상황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편도체(Amygdala)가 이를 받아들인 후 시상 하부의 CRH(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때 CRH는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 ACTH를 분비한다. 또한 ACTH는 부신 피질에서 다시 코티솔과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 이때 코티솔이 ACTH의 영향을 더 받으며 알도스테론은 주로 엔지오텐신 2(Angiotensin 2)의 영향을 받아 분비가 촉진된다. 앞에서 살펴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내분비 경로를 HPA 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이라고 하며 이것은 다른 말로 스트레스 반응 중추로 불리기도 한다. 부신피질에서 분비된 코티솔은 간과 신장을 거쳐 체외로 배출되는데 혈중 코티솔 농도가 높을 경우 음성 되먹임(Negative feedback)이 이루어지면서 CRH와 ACTH의 분비가 감소된다[16].

과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13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 코티솔이 증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예기 불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초기 영유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루마니아에 위치한 유아 보호소에서 자란 아이들과 정상 가정에서 양육된 2세 아이들을 비교한 결과, 유아 보호소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코티솔에 대한 일중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정상유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침 시간의 높은 분비와 오후 시간의 분비량 감소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초기 발달 시기 유아가 경험한 모성의 박탈이 결국 성장한 후 신체 리듬 조절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8-24, 27].

또한 과거 성학대를 비롯해서 신체학대에 시달린 성인들의 뇌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해마가 정상인에 비해 12%가량 작은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좌반구에 위치한 해마체적의 축소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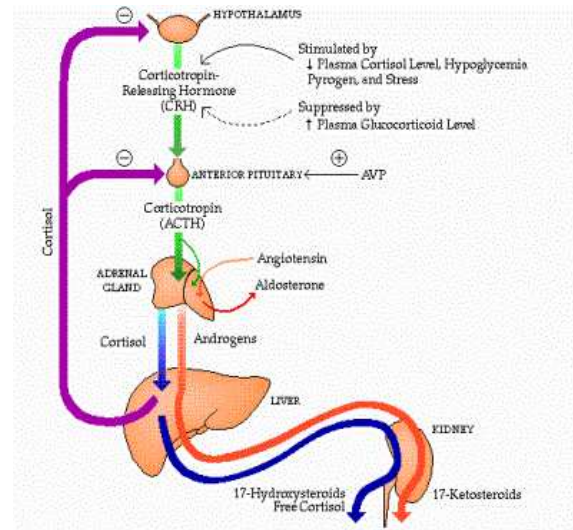


Fig. 4. Regulation of adrenal cortex hormones [16]

### 3.1.2 아동 성폭력과 성인 성폭력의 차이점

Schaff와 McCanne(1998)이 회고적 방식으로 475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이후 성적 피해 및 신체적 피해를 포함해 재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TSD 증상에서 유의하게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ergusson 등(2008)도 16-25세 연령의 지역사회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적 학대와 신체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이 한 가지 학대에만 노출되었던 사람들과 비교해 우울 및 불안장애, 약물남용, 품행문제 자살시도, 자살사고 등의 부정적 사고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3]. 다른 연구에서도, 정신과에 입원한 15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학대와 신체학대를 모두 경험한 아동이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을 보이며 특히 신체학대와 성학대를 중복해서 경험한 아동들은 더 많은 해리 또는 회피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24].

소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성인성폭력과 차별화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아동들이 아직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성은 임상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접근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피해는 성인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

을 미친다[24].

한편, 소아성폭력과 관련된 경험을 가진 성인은 우울 장애 및 섭식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학적인 행동 및 자살, 성적 문제, 이혼이나 별거 경험에 대한 빈도 수가 높고, 학업 및 직업에서도 성취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경우 인지적 발달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26].

#### 4.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

##### 4.1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의 문제점

기존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체계에 기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이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에 포섭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미비한 상태이며 이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종합대책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있지만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면밀한 분석 및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의 실효성 분석이 이루어져 현재 마련하고 있는 법안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디지털성폭력 촬영물에 대한 긴급 심의 및 삭제, 신속한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구성 및 소집과 관련해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가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으며 언제든지 재유포가 일어나기 매우 쉽기 때문에 단시간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및 피해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지원 및 법률지원, 수사지원, 심리치료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사회활동'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과 관련한 구상권 조항까지 도입, '가해자 책임의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7].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법은 현행 성폭력 방지법상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지원 사업이 그대로 지원된다. 여기에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 지원 규정으로 성폭력 방지법에 근거를 둔 불

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및 삭제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갖추으로써 가해자의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인권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며 손해에 대한 배상역시 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해 가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배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 4.2 가해자의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협박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이 유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상담소가 신고할 것을 권유하더라도 가해자가 언제 유포를 할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유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압수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 혼자 큰 위협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 점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에 비해 가해자의 협박에 더 영향을 받거나, 또는 사건 자체가 감당이 안되는 측면이 있어 곧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현재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대책에는 이들의 피해 사실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유포협박을 받았을 때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포협박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 가해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26.7%)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대응할 때, 가해자들이 영상물을 유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26.7%)을 가지고 있어 영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1순위로 원하는 도움은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27.1%)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촬영 피해의 경우 가해자 확인 및 영상 삭제 조치(29.3%)를 1순위로 응답해 피해 양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가해자가 유포협박을 할 경우 그 상대방이 지인인 경우가 많고, 유포로 인한 피해 발생시 디지털

털 환경 특성상 견잡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 확인 및 영상 삭제를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밖에 아동이든 성인이든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응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포협박에 시달리는 경우, 이들의 심리적 안정 및 지지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8-30].

#### 4.3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치료 상담 시스템의 필요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일반 오프라인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면 되는 반면,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특성상 일상생활 복귀까지 힘들어질 정도로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영상물의 유포가 시작되는 순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통제'란 한계가 있고 특히 유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중 대부분이 직장을 잃거나, 가족에게 버림받는 경우까지 있으며 피해자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는 경우도 있다. 즉,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더 큰 셈이다. 또한, 이들은 불특정 다수 중의 누군가가 자신의 영상물을 봤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하며 그 때문에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본인이 촬영 동의를 한 영상물일 경우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 역시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가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31].

## 5. 연구결과

### 5.1.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회복을 위한 주요 각국(미국, 영국, 호주)의 지원 제도 특징

#### 5.1.1 미국의 사이버 시민권보호기구(CCRI,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의 영향력

미국은 디지털 성폭력을 개인의 사생활 침해 관점에서 접근, 온라인 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미국에서 비디오 관음행위(Voyeurism)는 '합리적인 개인의 사생활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이미지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

적영상을 찍는 행위'는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비디오관음방지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단, 여기에 성폭력 개념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관점에서 법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성적인 것 역시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비디오 차원이 아닌 촬영물이 불법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각 주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 '성적 촬영물'이란 특수성이 강조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동의 성적 영상의 불법유포행위'와 관련해서는 주법률이 먼저 제정되고, 이후에 연방법률이 마련되었다[32].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차원에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에 근거해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공립학교 및 도서관의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필터링 같은 기술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비동의 성적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를 상대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정부 대응 기관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만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각종 민간단체들이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 성폭력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 5.1.2 디지털 성폭력 근절 비영리 단체 - 사이버인권 보호기구(CCRI)

사이버인권보호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s, CCRI)는 201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제26장 §501(c)(3)에 근거해 연방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비동의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홀리 제이콥스(Holly Jacobs)가 시작한 '리벤지 포르노 종결(End Revenge Porn)' 캠페인이 바탕이 되어 발족되었다. 현재 이 단체는 비동의 성적 영상 유포 범죄를 중심으로 사이버상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와 관련해 기술적·법적·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CCRI는 2012년 8월부터 '리벤지 포르노 종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서비스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지지 서명을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 '스피크업(Speak Up)'을 주 7일, 24시간 내내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용 질문지를 웹사이트에 게재, 피해자



들이 익명으로 피해상황을 기록해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수사·법률지원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헬프라인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CCRI 헬프라인 상담원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CCRI의 헬프라인(844-878-CCRI)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24시간 내내 접속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6].

또한 CCRI는 미국 내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3,044명을 대상으로 비동의 성적 영상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응답자 8명 중 1명이 비동의 성적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1.7배가량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포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9%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생각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CCRI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벤지 포르노’를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재정의 하고 비동의 포르노 (NCP: non-consensual pornography)로 명명할 것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CCRI는 누구나 비동의 영상물을 발견하면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삭제 가이드라인 (Online Removal Guide)’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나 경찰보다 먼저 비동의 영상물 또는 관련 이미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삭제 가이드라인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SNS를 통해 어떻게 스스로 삭제하거나 SNS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영상물로 의심되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해당 SNS를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CCRI는 포르노 그래피에 대한 교육 시스템들도 제공하는 한편 정보 제공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즉, 다양한 종류의 웹 사이트 활용 및 대학교 또는 컨퍼런스를 통한 발표, 그리고 미디어 인터뷰 및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비동의 영상물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특히 외설물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기술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연방 및 주 법률을 지지하는 한편, 관련한 법안 작성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매달 CCRI에는 평균 20

~ 30 명에 해당되는 복수 음란물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다. 또한 두 개의 주요 온라인 검색 엔진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그래피에 의한 희생자를 돕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도 했다. Google과 Microsoft는 각각 Google 검색 및 Bing에서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링크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웹 양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으며, Microsoft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통보받으면 OneDrive 또는 Xbox Live에서 공유된 콘텐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야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레딧, 그리고 틱톡과 같은 웹 사이트들은 리벤지 포르노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노골적인 내용 보고 및 영상물에 대한 제거 요청을 허용하고 있다 [37,38]

한편, BADASS(Battle Against Demeaning & Abusive Selfie Sharing, Badass Army라고도 부름)는 2017년 8월 설립된, 리벤지 포르노 및 통신 장비를 이용한 괴롭힘, 아동 포르노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차원에서의 교육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BADASS는 2018년부터 누드사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사진이 업데이트 되면 게시자의 허가 없이 자동으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W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ADASS의 회원인 경우 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 달에 5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ADASS는 피해자 구제에 그치지 않고 입법운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리벤지 포르노 법안 입법 운동을 오하이오 주에서 성공적으로 지원(캠페인 등)한 바 있다. 현재 BADASS는 앞에서 다룬 CCRI와 함께 각 주의 입법내용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40-44]

### 5.1.3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과 쉴드법(Shield Act)의 쟁점

리벤지 포르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관련 형사법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자, 미국 의회는 1996년, 최초로 주정부 스토킹 관련 법령인 18 USC § 2261A를 통과시켰으며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 또는 두려움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6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스토킹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며 그밖에 피해자의 고통 자체를 피해로 인식하는 규정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후 50개 주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 스토킹을 포함한 사이버 공간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 온라인상에서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위협적인 행동 패턴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는 리벤지 포르노 법만으로 가해자를 기소하는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노골적인 사진이나 비디오를 한 번에 게시하는데 기소는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사이버 스토킹 법규에 따라 성공적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명시적으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게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물론, 이때 피고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돈이나 명성 또는 개인의 성적 환상 성취와 같은 다른 동기를 주장할 수도 있다[36]

따라서 민사 소송 및 저작권법,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률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 리벤지 포르노를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는 추가적인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총 26개 주에서 리벤지 포르노 그라피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기소된 범죄에 대해 경범죄 또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주(州)에 의존하고 있다 [36-39]



Fig. 5. States with revenge porn laws[ 37-41]

그중 뉴저지와 캘리포니아는 관련법을 최초로 제정한 지역이며 연방 법령에 따라 피해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민사 소송 제기과 관련된 부담은 연방 법령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법안 중 하나이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을 연방법으로 제정하였으며(현재는 47 U.S. code 에 포함되어 있음). 제 203조(c)(2) 법률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Service provider, ISP)가 선의로 불건전한 내용에 대한 감시 및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은 명예훼손이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한국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자행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및 성희롱, 아동성학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 한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 조성되고 있다 [47,48].

이에 지난 2019년 5월 22일, Jackie Speier과 John Katko 두 하원 의원은 성 착취를 담은 유해한 이미지의 제작 및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 'SHIELD Act'를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일명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사적인 이미지를 제작 유통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Speier 의원은 그 외에도 2016년, 114차 의회에서 IPPA (Intimate Privacy Protection Act) 법안을 도입했으며 IPPA 법안 역시 리벤지 포르노를 연방 차원의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가 게시된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해당 콘텐츠를 웹 사이트에 올린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이다[47-50].

한편, Kamala Harris 의원은 IPPA의 동반 법률인 SHIELD ACT(셴드법)을 상원에 도입할 예정이며 이 법안은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않은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상식적인 보호 수칙을 담고 있다[52].

#### 5.1.4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조장 사이트를 규제하는 미 FOSTA-SESTA 법 발효에 관한 오해와 쟁점들

성매매를 조장하는 웹사이트를 처벌하는 법안인 「FOSTA-SESTA」는 각각 미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되었으나, 두 법안들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의 성매매 규제 법안과는 차이점이 있다. 즉, 기존 성매매 규제 법안(Communication decency act)은 온라인상에서 외설물을 배포하는 행위만 원칙적으로 금지했을 뿐 웹사이트 업체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FOSTA-SESTA」이 제정되면서 성매매 광고 및 홍보물이 올라온 웹사이트에 대해 게시물을

올린 알선자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FOSTA-SESTA」 제3조에는 ‘제재를 무시하고 분별없이 성매매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 경우 가중범죄로 간주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명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법제에도 도입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OSTA-SESTA」은 지난 2018년 4월 11일에 미국에서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 유통 또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는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벌 및 규제가 적용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하원과 상원은 현재 성매매금지법인 SESTA와 온라인성매매금지법인 FOSTA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 두 법안에 대한 오해와 팩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각 법안에 대한 오해와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DA 230을 수정하지 않으면 인신매매자들을 비롯한 범죄자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오해에 대해 CDA 230은 연방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일에 대한 책임 면제를 온라인 플랫폼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법무부는 Backpage와 같은 사이트에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Backpage에 대한 기소 절차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CDA 230은 사용자가 저지른 국가적 범죄에 대한 책임 및 민사 소송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해 플랫폼 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만약 웹 사이트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개발 또는 생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CDA 230은 웹사이트에 부과되는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미 Backpage가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해 사이트 측이 CDA 230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으며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Backpage 관련 소송에 대해 CDA 230을 근거로 한 방어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불법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Backpage가 기여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및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Backpage는 현재 CDA 230 보호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플랫폼을 고소하기 위해 CDA 230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팩트이다.

다음으로 제기되고 있는 오해는 SESTA가 가해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솔루션이라는 오해로 이것은 웹사이트가 실제로 해당 콘텐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불법 콘텐츠가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웹사이트 측에도 묻는다는 점에서 SESTA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데이트 앱 등 특정 어플이 의도치 않게 성매매를 제공하는 일에 사용되었고 이 사실을 웹사이트에서 인지하고 있다면 성매매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이미 형사상 책임이 부과된 특정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직접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SESTA 수정안이 거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SESTA가 가해 당사자만 한정해 처벌하는 솔루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음으로 SESTA가 CDA 230을 수정하지만 FOSTA는 Mann Act만 수정한다는 오해가 제기되고 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FOSTA는 주 검찰이 플랫폼을 상대로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CDA 230이 플랫폼에 적용되는 것을 FOSTA가 명백히 변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FOSTA는 연방 검찰과 주 검찰이 함께 CDA 230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신매매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이것은 플랫폼이 CDA 230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책임 면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핵심 원칙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SESTA가 부재할 경우 성매매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은 치료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플랫폼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CDA 230에 새로운 예외 규정이 생겼으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FOSTA에는 이 예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플랫폼이 인신 매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적인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FOSTA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매매 생존자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주장은 맞지 않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FOSTA에 근거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 내 현행법은 인신매매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SESTA와 FOSTA간의 실질적 차이점은

SESTA를 통해 가해 당사자가 아닌 플랫폼에 대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FOSTA는 법집행기관에 의해 고발당한 적이 없는 플랫폼을 민사 소송인이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단, 이 같은 이유로

FOSTA에 반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SESTA와 FOSTA가 인신매매를 중단하기 위한 법이며 플랫폼이 소송에 방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온라인 트래킹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려운 만큼 FOSTA에 대한 반대는 인신 매매 근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3,54].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제정된 통신품위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외설물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부분만 금지했을 뿐 제3자가 배포한 외설물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을 빌미로 그동안 반인륜적·반사회적 게시물에 대해 웹사이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급성장하는 혜택을 누리왔지만 SESTA법의 제정으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의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다. 한편, 거대 IT 기업들은 SESTA가 성매매 근절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 모델을 크게 훼손할 거라는 논리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하원이 발의한 FOSTA법안(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과 상원이 발의한 SESTA 법안(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이 지난 4월 1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팔고 있다는 비난이 가해졌던 backpage(Backpage)2)와 같은 웹사이트는 그동안 제3자가 올린 광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조항으로 작용해 온 CDA(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의 혜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FOSTA-SESTA 입법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의회 의 인식(Sense of Congress)’을 통해 CDA 230조는 플랫폼이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비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 아님을 명시했으며 그밖에 미연방법(United States Code) 제 18편 117장에 ‘성착취 인신매매를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발생을 촉진 또는 장려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성매매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를3) 지속해서 소유하거나 운영, 관리하는 업체에는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5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것을 부주의하게 방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

령을 내리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FOSTA-SESTA법은 성매매는 물론 성착취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를 방조한 웹사이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의해 많은 여성을 거리로 내몰리게 할 것이며 안전한 구매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된 성매매 여성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거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빌라노바대학교(Villanova Univ.) 연구진은 성노동을 옹호하는 이들이 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사실이 옳다고 있다는 점을 기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연구진들에 따르면 FOSTA-SESTA법은 그동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리 책임을 면제해 주었던 CDA 230조의 허점을 채우는데 기본 목적이 있으며 성을 광고하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성매매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논리로 성노동 옹호론자들이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또한 FOSTA-SESTA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성매매를 포함한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조장하거나 또는 방조하는 웹사이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성노동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폭력적이고 살인할 가능성을 가진 성구매자를 웹사이트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성을 상업적 목적을 갖고 일종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위험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또한 웹사이트가 위험 요소를 가진 성구매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100% 정확하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것은 성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명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터무니없는 전제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Backpage의 CEO인 칼 페러(Carl Ferrer)에 대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주 법원은 자금세탁 및 성매매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로서 칼 페러는 FOSTA-SESTA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에 칼 페러는 유죄 인정서(plea agreement)를 통해 나는 Backpage 고객들이 저지르는 성매매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Backpage 내 주요 인사와 공모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또한 페러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용어 및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조정(moderation)’ 작업을 했다는 혐의도 인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그런 종류의 수정 작업은 광고가 암시하는 불법적인 서비스가 갖는 본질적 특성을 바꾸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55,56].

## 5.2 영국의 피해자 지원 제도

영국은 현재 온라인 성폭력의 행위에 대한 규범을 성범죄법(Sexual Act 2003)에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해석을 통해 피해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002년에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가 내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은 ‘형사정책에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주류화’를 주장했으며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 입각해 가해자의 폭력전과 및 범죄 이력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안이 경찰의 치안 정책에 포함되면서 일명 클레어 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지원정책들의 기틀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영국 내무부에서 ‘가정폭력 개념 변경의 세부 정보’라는 정책집을 발간하면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했으며(2013.03)가정이라는 한계를 넘어 모든 형태의 강압적인 폭력과 학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즉,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정책의 초점이 여성에서 남녀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모든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가정, 성인, 약자, 강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관점에서 ‘피해’의 의미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영국 내 여성과 아동 폭력 정주 정책 자료집(2010-2015)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와 숙고를 통해, 영국은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이 세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Victim Support(피해자 민간단체) 역시 잘 조직되어 있다. 또한, 영국 정부 역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8,59].

### 5.2.1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Revenge Porno Helpline)-

영국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의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이며 이 기관은 「2015년 형사사법법」 상에서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함께 설립되었다. 또한 현재 내무성(Home Office)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의 기본 역할은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상황을 듣고 이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있다. 단, 이때 함부로 피해자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Fig. 6. Revengeporno helplinewebsite [60]

또한 이 기관은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성적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차단 및 직접적 삭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아니므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업계와 긴밀히 협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또는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신고 및 삭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60,61].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 파일럿(Facebook Pilot)’ 서비스를 통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성적 콘텐츠의 삭제를 들 수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현재 동의 없이 공유되고 있는 성적 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신고 도구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성적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자들을 위해 해싱(hashing) 도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삭제하면서 그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해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후 동일한 콘텐츠를 다시 게시하려는 시도는 해싱 도구에 의해 즉각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아직 이미지가 공유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유포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그 영상이 업로드되는 것을 페이스북이 차단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가 검색을 위해 페이스북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이다. 또한 이 기관은 필요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과 함께 법률적 조력도 지원한다[60,61].

### 5.2.2 위스퍼 컨택 제도



위스퍼 컨택 제도의 특징은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취약한 입장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이다. 위스퍼 컨택 홈페이지 전면에 나오는 단추는 모두 전화 연락을 신청하는 단추이며 전화로 연락하는 방식과 이메일 및 전화 요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익명으로 비밀 연락을 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연락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피해자가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임을 드러내는 사례로서 피해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8].

5.2.3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 (Internet Watch Foundation : IWF)

인터넷 감시 재단(IWF.Internet Watch Foundation)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국제적인 인터넷 기업이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전 세계의 경찰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 지난 23년간 익명으로 불법 영상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25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IWF는 접수되는 모든 신고를 평가한 뒤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이미지 혹은 영상은 즉시 삭제한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 현재 크롤러(crawler)와 같은 최고 수준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96년, IWF는 온라인상에 육안으로 드러나는 웹페이지 100만 건과 아동 성학대 영상물이 등장하는 웹페이지 47만 7,595개를 삭제했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2분 단위로 웹 페이지를 평가, 5분마다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의 이미지 및 영상이 업로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피해자 중 여아 이미지가 78%에 달했으며 남아 이미지는 17%, 그리고 남아와 여아 모두가 등장하는 이미지는 4%로 드러났다. 또한 소수 이미지에서는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학대의 심각성은 각각 A범주, B범주, C범주로 나눌 수 있다. A범주는 강간 또는 성적 고문을 포함해 성인과 아동간의 성행위가 나오는 이미지(%). B범주는 비삽입 성행위가 등장하는 이미지(%), C범주는 A범주 및 B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음란 이미지가 포함된다.

Fig.7 에 따르면 2014년-2018년에 걸쳐 온라인상에서 늘어난 아동 성학대 URL 수가 대대적인 삭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있어 가해자들의 수요 및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사악한 위협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것은 거대한 온라인 포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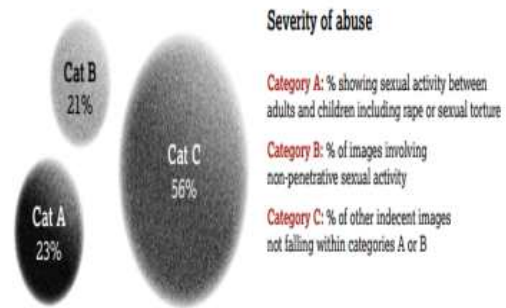


Fig. 7. Severity of abuse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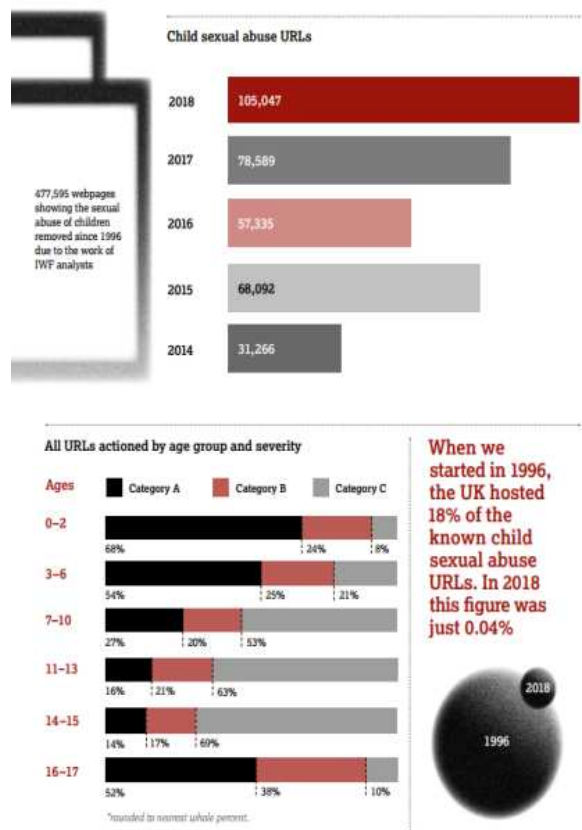


Fig. 8. child sexual abuse URLs and all URLs acted by age groups and severity [62]

들과의 싸움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심지어 0~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A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간 성행위 이미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울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학대 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IWF는 현재 전문 분석과들의 능력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 온라인상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비디오 해싱을 위한 photo DNA가 출시된 되었는데 기존에 사용된 '디지털 지문'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사용

되었다. 기존에 사용된 ‘디지털 지문’을 부여하는 시도는 온라인상에서 끊이지 않는 방대한 분량의 범죄 이미지들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사진에만 적용되고 동영상의 태그를 지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마이크로 소프트 photo DNA의 도움으로 한 단계 더 상승한 해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을 해시 목록에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가 기술 업체들에게 제공되었고 이에 기술 업체들은 가해자들이(범죄자들)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 사례를 통해 기술 개발을 통해 한 단계씩 발전하는 것이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재단의 특성상 맞춤형 신고 관리 시스템(report management system, RMS)이 요구되기 때문에 RMS4를 개시했으며 이 시스템의 주된 기능은 IWF 핫라인 분석가들이 자동화 및 통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 하는 데 있다. 또한 지능형 크롤러가 통합됨으로써 IWF 분석가들이 올해 기록적인 확인 건수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RMS4 역시 이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감시재단 기술 회원사들내 자체 감시 팀이 아동 성학대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으며 이에 기반해 상호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IWF는 분석 작업에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험했으며 이에 자동 분류가 인터넷 감시재단의 일상 업무 중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감시재단들이 최첨단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기술 협력사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신기술과 인터넷감시재단 전문가와의 역할 균형이 조화를 이루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즉, 인간의 전문성과 기술 개발 간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IWF는 민간단체이지만, 영국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영국이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온라인 접속 장소’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이것은 내무장관인 사지드 자비드 하원의원이 공개 연설에서 IWF의 업무를 높이 평가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내무장관은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학대 영상물과 함께 게시되는 합법적 광고를 전수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들의 수익 창출 여부로 연결될 수 있는지 확

인해 달라는 요청을 인터넷감시재단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에 인터넷감시재단은 그해 말, 요청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터넷감시재단은 2019년, 이 문제와 관련해 협력사들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내무장관, 기타 비정부단체 및 기술업체들과 함께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IWF의 부대표 겸 최고기술책임자를 맡고 있던 프레드 랭퍼드의 경우 의장을 맡고 있는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적도 있다.

그밖에 IWF는 EU와의 협조를 통해 신규 온라인 개인 정보보호 지침과 관련된 제안을 수정하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것은 신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기술업체들이 온라인 아동 성학대 영상물을 삭제할 때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영국의 EU 탈퇴는 향후 인터넷감시재단이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재단 운영비의 10%를 EU에서 지원받는 인터넷감시재단 내 EU집행위원회와 영국 유럽의회의원들이 함께 진행한 원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회의 이후 EU집행위원회가 영국 인터넷안전센터의 자금 조달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일단 2020년 말까지는 자금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또한 영국 정부 역시 최소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 동안에는 자금 조달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인터넷감시재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하원의원인 다니엘 자이히너(Daniel Zeichner) 하원의원은 기술업체를 비롯, 치안 담당자 및 정부 대표들과 함께 원탁회의를 진행하면서 재단에서 발행한 2017년 연례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IWF는 일 년 내내 30명이 넘는 의원들과 함께 서통하며 전략적 우선순위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며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 IWF 측에서는 협의 및 위원회 회의에 IWF가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재단의 대응 전략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2018년,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수지 하그리브스 대표가 하원 과학기술위원회(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와 상원 통신특별위원회(House of Lords Communications Select Committee)에 증거를 제공한 바 있으며 또한 조직이 개편된 영국 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의 이사회에 재임명되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감시재단은 성착취 및 성학대에 희생되고 있는 아

동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란자로테위원회의 옵서버 지위를 유일하게 획득한 핫라인이자 영국 기관이며 이것은 IWF가 정부가 주도한 기관이 아닌 민간 차원의 비영리 단체부터 시작해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60-63].

### 5.3 호주의 온라인안전국(OESC,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과 이미지 기반 성폭력대응팀(Image-Based Abuse Team) 국가 주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호주는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가 법률로 제정되면서 그 안에 담긴 함의가 명시적인 방향성으로 굳어진 국가이다. ‘이미지 기반 학대’는 지난 2015년 ‘법률 및 헌법 관련 참조 위원회 (Australian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References Committee)’가 리벤지포르노라는 기존의 용어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양하고 가해자가 중심이 된 용어로 바꾸기 위해 고안된 용어이며 이에 따라 현재 법률과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가해자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학대’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호주의 디지털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모든 호주인이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는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이 디지털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디지털안전위원회에 배치된 인력은 통신미디어청의 직접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계약상으로는 통신미디어청과 고용계약이 적용되고 있다.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대략 50명 안팎의 인원 및 그 외 많은 외부 계약인력들이 디지털안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 디지털안전위원회는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안전위원회는 설립 이후 호주 정부 및 관련 업계,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 및 단체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이미지 기반 학대 및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콘텐츠 등에

대한 사용자의 고충 처리를 위해 ‘사이버 불링’이라는 이름의 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디지털안전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은 호주의 「온라인 안전 강화법 2015(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안전위원회는 정부 및 관련 업계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한 노력을 조정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과 그밖에 심각한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호주 내 청소년들을 위해 불만 처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 삭제하는 활동을 통해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응할 것이 법률에 기반해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18년~2019년에 보고된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디지털안전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미지 기반 학대’와 관련해 삭제 요청된 건 중 90% 정도가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지 기반 학대’와 관련해 신고 접수된 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는 누드 또는 성적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는 경우와 더 많은 성적 이미지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sexual exploitation)하는 등의 유형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드나 성적 이미지가 불특정 다수와 공유되거나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경우, 해킹 등을 통한 사기(scam) 및 공유 협박 등의 사례가 다수 신고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서호주 정부는 ‘이미지 기반 학대’에 단호하게 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건이 치안판사가 주재하는 하급법원에 배당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의 징역형 및 최대 \$18,000 호주 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중급법원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에는 최대 3년 동안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2019년 서호주 지역에서 해당 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등장했으며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미지 기반 학대’가 명백한 범죄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64].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어린이를 고려한 온라인 안전 유지 및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비영리기관 및 민간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사업에 1억 호주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65]. 이처럼 어린이 온라인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에 정부 차원의 적

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호주 정부는 ‘이미지 기반 학대’와 관련해 국제적 협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4-66].



Fig. 9. Government Western Australia Poster[32]

## 6. 논의와 결론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인 ‘웹캠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인 한국인이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기소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뒤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린 이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digital sexual violence)에 대한 이슈가 비단 특정 사회만의 문제에 해당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센터를 발족, 법률 및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이미지 삭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 및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탐지한 뒤 수사를 요청하고, 이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도 실시간으로 전달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불법사이트와 촬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촬영물을 삭제하는 지원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의 유포, 소지 등의 범죄 행위를 자행했을 때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배포하는 경우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유통·배포·소지하는 경우를 구분해 각각의 처벌을 규정해 두고 있다. 하지만 성착취물 또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시청 및 접근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성

착취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확장성을 고려해 세부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고 있으며 실례로 접근(다운로드) 및 시청·관음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해외 각국의 이러한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 역시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의 소지 및 시청에 대해 단계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안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에도 미비점이 많은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쟁점은 가해자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 규모의 확산 사례를 막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현행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불법 영상물의 신고 후 실행되는 삭제 조치가 효율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불법 영상물이 업로드 된 업체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법원 및 행정기관에 의한 처벌은 그 신속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시급히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유포 및 확대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세분화된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의 피해 구제제도를 분석, 우리가 도입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체 그리고 웹 사이트 및 콘텐츠 호스트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기관 간 빠른 협조를 통해 강제 절차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간주,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규모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필수적인 게시물 삭제 및 이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조치에 미비점이 많다.

실제로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을 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악한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양형기준이다.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계적 추세 및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디지털 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유통한 뒤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함정수사 등의 기법을 도입, 신속하게 검거할 필요가 있으며 성착취물을 제작·유

통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극히 안 좋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 조치 등을 도입하고 동시에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등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범죄 특성상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통이 국경과 사법권의 경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담신고 및 수사기관을 설치,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등의 체계가 마련되는 동시에 국제 공조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감시 및 피해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함께 펴 나가고 있다. 실례로 영국의 민간자율 기구인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은 매해 전 세계적으로 여성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착취 촬영물 및 음란물의 실태를 조사해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한 가해자를 추적, 신고한 뒤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해외 각국의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인 성적 사진 및 필름이 유출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형사 기소에 대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처럼 해외 주요 각국 그중에서도 호주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 구제 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호주의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호주의 인터넷 안전국(Office of eSafety Commissioner)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독립적 성격을 가진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산하의 법정 기관이다. 인터넷 안전국은 호주 내 온라인 환경 안전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피해 차단 및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2015년 온라인 안전 강화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인터넷 안전국에는 사이버 괴롭힘,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와 관련해 신고·사례가 접수되면 48시간 내에 가해자 및 이미지가 업로드된 소셜미디어 업체, 그리고 웹, 사이트서비스 호스트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적 강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호주는 가해자 및 관련 업체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신속 삭제 제도(the Rapid Removal Scheme)'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

국 또한 성착취 인신매매법 면책방지법(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을 발의함으로써 성착취 이미지가 업로드된 웹사이트에 민사적, 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연방 법무부만이 아닌 주 사법 당국자들이 연방 성착취 인신매매법 면책방지법(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을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법안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해외 주요 각국에서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법안들을 하나씩 개정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해외 주요 각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역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행위 양태, 대상을 구체화해 세분화된 경우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사법적 제재는 현재보다 더 세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받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무제한으로 확대·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루밍 수법에 대한 대응으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또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기준 역시 강화되었다. 특히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동의나 협박과 상관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성폭행으로 간주했으나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넓혔으며 그 외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모의 혹은 준비만 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에 텔레그램 성착취(일명 'N번방 사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잠입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도 입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식 기관이며 동행지원 및 지지 상담, 의



료 지원,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된 업무는 피해 사례 접수 후 완벽하게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것에 있지만 인력부족이라는 난제에 부딪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것은 안정성 있는 지원을 받는 기관이 확충될 필요성을 시사하며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기업들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포 범위가 큰 피해자인 경우 인력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시급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DNA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동시에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추적이 용이하다. 하지만 좀 더 빠른 불법 영상물 삭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적 한계에 따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사진 및 인적 사항을 입력했을 때 이른바 다크웹에서도 그와 유사한 성착취물을 즉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경우 오프라인 피해와는 달리 영상물의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이것은 다크웹으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삭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술의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정책 및 입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들의 잔인한 수법 역시 나날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들에게 유인되어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교육 역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불법 사이트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포의 수단 및 방법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공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여성 및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가의 공적 규제에 더해 ‘모두가 서로를 위한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 구현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 REFERENCES

- [1] M. G. Gwon. (2018). A Study on the Process about Supporting Victims of Digital-sexual crimes. 10(3), 2018.12, 39-76(38 pages).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10(3), 2018.12, 39-76(38 pages)
- [2] Korea Women's Human Rights Promotion Agency (2019). *2019 Public-Private Governance for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Operation, and Support Guide for Children and Youths affected by sexual exploitation*. Women's Human Rights.
- [3] Taktin Neil Child and Youth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2017). Analysis of 78 cases of counseling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under the age of 20 from 2014.7 to 2017.6. Seoul. Tacktinneil.
- [4] S. H. Lee. (2016).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the results of surveys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of child and youth prostitution*. Seoul: Hanhak Culture
- [5] J. Y. Kim, J. T. Hwang, S. Y. Choi & H. A. Kim. (2019). *Analysis on the Trends and Trend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Youth-2011~201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6] D. K. Yun, J. H. Kim, J. Y. Chun, Y. M. Kim & K. H. Woo (2018). *Online sexual violence victims protection plan*.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 [7] H. A. Kim, S. H. Kim., Y. M. Kim, Y. J. Jang, S. H. Seo & J. Y. Park. (2019).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Digital Sexual Crimes and the Support of Victims*. the Korean Women's Bar Association The National Assembly Women's Family Committee Research Report.
- [8] S. h. JO (2020). Over the past five years, 3906 "success crimes" have occurred, including the produ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 pornography.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_xno=45496](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_xno=45496)
- [9] J. Y. Kim, J. T. Hwang, S. Y. Choi & H. A. Kim. (2019). *Analysis on the Trends and Trend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Youth-2011~201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10] Glaser D. (2000).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brain—a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1), 97-116.
- [11] Krug, E. G., Mercy, J. A., Dahlberg, L. L., & Zwi, A. B. (2002). The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Lancet (London, England)*, 360(9339), 1083-1088. [https://doi.org/10.1016/S0140-6736\(02\)11133-0](https://doi.org/10.1016/S0140-6736(02)11133-0) Patricia Conway First published: 08 January <https://doi.org/10.1002/casp.740> Citations: 2
- [12] Glaser D. (2003).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Brain—A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ume 41, Issue 1 <https://doi.org/10.1111/1469-7610.00551>
- [13] J. K. Wing., S. A. Mann., J. P. leff & Nixon, J. M. (1978). The concept of a 'case' in psychiatric population surveys. *Psychological Medicine*, 8(2), 203-217. Cambridge University

- Press. <https://doi.org/10.1017/S0033291700014264>
- [14] Spike, J. (1995). Book reviews -- Rethinking Life and Death: The Collapse of our Traditional Ethics by Peter Singer.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3(22), 1509.
- [15] Hofer, M. A. (1994). Hidden Regulators in Attachment, Separation, and Los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192-207. <http://ps3.doi.org.sproxy.hufs.ac.kr/10.2307/1166146>
- [16] L. Ling (2014). Regulation of adrenal cortex hormones.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ing1134&logNo=22015601270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 [17] Schore, A. N.(1996). The experience-dependent maturation of a regulatory system in the orbital prefrontal cortex and the origin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59-87.Cambridge University Press
- [18] Kolk, B. A. v. d., & Fisler, R. E. (1994).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loss of self-regulation.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8(2), 145. Retrieved from <http://ps3.search.proquest.com.sproxy.hufs.ac.kr/docview/1298126275?accountid=16028>
- [19] De Bellis, M., Baum, A., Birmaher, B., Keshavan, M., Eccard, C., Boring, A., Jenkins, F., & Ryan, N. (1999). Developmental traumatology Part I : Biological stress systems. *Biological Psychiatry*, 45, 1259-1270.
- [20] De Bellis, M., Chrousos, G., Dorn, L., Burke, L., Helmers, K., Kling, M., Trickett, P., & Putnam, F. (1994).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dysregulation in sexually abused girls.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7, 249-255.
- [21] De Bellis, M., Keshavan, M., Clark, D., Casey, B., Giedd, J., Boring, A., Frustaci, K., & Ryan, N. (1999). Developmental traumatology Part II: Brain development. *Biological Psychiatry*, 45, 1271-1284.
- [22] De Bellis, M., Lefter, L., Trickett, P., & Putnam, F. (1994). Urinary catecholamine excretion in sexually abused girl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 320-327. De Bellis, M., & Putnam, F. (1994). The psychobiology of childhood maltreatment. *Child and Adolescent Clinics of North America*, 3, 663-678.
- [23] Carlson, M., & Earls, F. (1997). Psychological and neuro-endocrinological sequelae of early social deprivation in institutionalized children in Romania.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07, 419-428.
- [24] Carlson, V., Cicchetti, D., Barnett, D., & Braunwald, K. (1989a). Finding order in disorganization : Lessons from research on maltreated infants' attachments to their caregivers.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 494-5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5] Carlson, V., Cicchetti, D., Barnett, D., & Braunwald, K. (1989b). 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relationships in maltreate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25-531
- [26] Hart, J., Gunnar, M., & Cicchetti, D. (1995). Salivary cortisol in maltreated children: Evidence of relationships between neuroendocrine activity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1), 11-26. doi:10.1017/S0954579400006313
- [27] Hart, J., Gunnar, M., & Cicchetti, D. (1996). Altered neuroendocrine activity in maltreated children related to symptoms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1), 201-214. doi:10.1017/S0954579400007045
- [28] Stein, M. B., Koverola, C., Hanna, C., Torchia, M. G., & McClarty, B. (1997). Hippocampal Volume in women victimized by childhood sexual abuse. *Psychological Medicine*, 27(4), 951-959. <https://doi.org/10.1017/S00332917970052>
- [29] Schaaf, K. K., & McCanne, T. R.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sexual, physical, and combined sexual and physical abuse to adult victimiz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ild Abuse & Neglect*, 22(11), 1119-1133. [https://doi.org/10.1016/S0145-2134\(98\)00090-8](https://doi.org/10.1016/S0145-2134(98)00090-8)
- [30] Deblinger, E., McLeer, S. V., Atkins, M. S., Ralphe, D., & Foa, E. (1989). Post-traumatic stress in sexually abused, physical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3(3), 403-408. [https://doi.org/10.1016/0145-2134\(89\)90080-X](https://doi.org/10.1016/0145-2134(89)90080-X)
- [31] King, N., Heyne, D., & Ollendick, T. (2005).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s for Anxiety and Phobic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Behavioral Disorders*, 30(3), 241-257. <https://doi.org/10.1177/019874290503000304>
- [32]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 Herbison, G. P.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1), 7-21. [https://doi.org/10.1016/0145-2134\(95\)00112-3](https://doi.org/10.1016/0145-2134(95)00112-3)
- [33] Courchesne, E., Chisum, H., & Townsend, J. (1994). Neural activity-dependent brain changes in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4), 697-722.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4740>
- [34] Korea Cyber Sexual Violence Response Center (2017). Guide to Support Victims of Cyber Sexual Violence.
- [35] Korea Women's Population Policy Agency (2019). *2019 Public-Private Governance for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 guide to support children and teenagers affected by sexual harassment.
- [36] C. Varriale. (2018).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Copyright Laws and "Revenge Porn", *Entertainment and Sports Lawyer*. 34, 35-37

- [37]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2014). *Nonconsensual Porn infographic*.  
<http://www.cybercivilrights.org/revenge-porn-infographic/>.
- [38]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2020). CCRI crisis help line.  
<https://www.cybercivilrights.org/ccri-crisis-helpline/>
- [39] Kamal, M., & Newman, W. J. (2016). Revenge Pornography: Mental Health Implications and Related Legislat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44(3), 359-367.
- [40] G. OH (2020). BADASS – battling against demeaning and abusive selfie sharing.  
<https://www.idealists.org/en/nonprofit/8740bfe003324995bc5257854057fb86-badass-battling-against-demeaning-and-abusive-selfie-sharing-girard>
- [41] BADASS ARMY (2020). Press Part of the website.  
<https://badassarmy.org/>
- [42]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9). *Tren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view (regulation of digital sexual violence content)*.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2019(2)
- [43] J. M. Ahn, S. K. Kim & S. Y. Jung. (2018). *A Survey on the Institutional Response of Major Countries to Digital Sexual Crimes*.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 [44] Statistic Brain, Sexting Statistics,  
<http://www.staticbrain.com/sextling-statistics/>
- [45] S. D. Warren & L. D. Brandeis.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 4, No. 5, pp. 193-220.  
 URL:<http://links.jstor.org/sici?sici=0017-811X%2818901215%294%3A5%3C193%3ATRTP%3E2.0.CO%3B2-C>
- [46] Bloom, S. (2014). No vengeance for “revenge porn” victims: Unraveling why this latest femalecentric, intimate-partner offense is still legal, and why we should criminalize it. *Fordham Urban Law Journal*, 42, 233-289.
- [47] I. H. YOO. (2020). Communication Decency act and ISP’s liability exemption.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unlaw&logNo=221956031464&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 [48] Linkous, T. (2014). It's Time for Revenge Porn to Get a Taste of Its Own Medicine: An Argument for the Federal Criminalization of Revenge Porn. *Richmon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20, 14.
- [49] A. C. Estes (2015). This Is the Revenge Porn Law We Need in America. *GIZMODO*  
<https://gizmodo.com/this-is-the-national-revenge-porn-law-we-need-1686856437>
- [50] Jackman, T. (2017, August 1). Senate launches bill to remove immunity for websites hosting illegal content, spurred by Backpage.com. Washington Post.  
<https://link.gale.com.sproxy.hufs.ac.kr/apps/doc/A499674855/AONE?u=keris165&sid=AONE&xid=527ef923>
- [51] News room (2017). Senators introduce bipartisan Legislation to Hold Backpage Accountable, Ensure Justice for Victims of Sex Trafficking. retrieved from:  
<https://www.portman.senate.gov/public/index.cfm/press-releases?ID=1FF6DB17-B7A2-4E70-B901-CA07E43065CB>
- [52] T. Manzer. (2019). *Reps. Speier and Katko Introduce Bipartisan Bill to Address Online Exploitation of Private Images*.  
<https://speier.house.gov/2019/5/rep-speier-and-katko-introduce-bipartisan-bill-address-online>
- [53] Myth versus Fact (2019) SESTA / What to Know about FOSTA  
<https://ko.bccrwp.org/compare/myth-vs-fact-what-you-need-to-know-about-sesta-fosta-7aa6f8/>
- [54] B. G. Song. (2019). *Analysis of Sex Purchasers in Korea to Stop the Demand for Prostitution: Focused on the Post-Sexual Sex Purchasing website*. Korean Women's Human Rights Promotion Agency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hrck&logNo=22151675231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 [55] Rhodes, S.M. et al.(2018.5.22) SESTA/FOSTA imposes accountability on internet service providers,remains misinterpreted by many. The Hill. Retrieved from  
<http://thehill.com/blogs/congress-blog/judicial/388694-sesta-fosta-imposes-accountability-on-internet-service-providers>
- [56] Jackman, T. (2018.4.13.) Backpage CEO Carl Ferrer pleads guilty in three states, agrees to testify against other website officials.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rue-crime/wp/2018/04/13/backpage-ceo-carl-ferrer-pleads-guilty-in-three-states-agrees-to-testify-against-other-website-officials/?noredirect=on&utm\\_term=.5d20ae506f58](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rue-crime/wp/2018/04/13/backpage-ceo-carl-ferrer-pleads-guilty-in-three-states-agrees-to-testify-against-other-website-officials/?noredirect=on&utm_term=.5d20ae506f58)
- [57] J. S. LEE. (2017). The Senate unanimously passed a bill to crack down on online prostitution.  
<https://www.asiae.co.kr/article/2017110908172980941>
- [58] Ministry of interior (2013). Information for local areas on the change to the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abuse.  
[http://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42701/guide-on-definition-of-dv.pdf](http://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42701/guide-on-definition-of-dv.pdf).
- [59] Policy paper/Home office(2015):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Updated 8 May 2015)  
<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2010-to-2015-government-policy-violence-against-women-and-girls/2010-to-2015-government-policy-violence-against-women-and-girls#appendix-3-domestic-violence-and-abuse>
- [60] Revenge Porn helpline (2020). Have you had your

intimate images shared online without your consent?  
You are not alone and we are here to help.  
<https://revengepornhelpline.org.uk/>

- [61] They didn't know they were victims': revenge porn helpline sees alarming rise: Victims and their loved ones report sense of powerlessness in face of flawed laws and mixed police responses. (2016, May 8). *Guardian* [London, England].  
<https://link.gale.com.sproxy.hufs.ac.kr/apps/doc/A451827296/AONE?u=keris165&sid=AONE&xid=0d485f93>
- [62] The Internet Watch Foundation(2018) IWF Annual Report 2018.  
[www.iwf.org.uk/themes/iwf/images/theme-images/logo.png](http://www.iwf.org.uk/themes/iwf/images/theme-images/logo.png)
- [63] Bond, E. & Tyrrell, K. (2018). The Revenge Porn Helpline: An evaluation of annual Helpline data from April 2017 — March 2018. University of Suffolk.
- [64] Department of Western Australia (2020). Western Australia's New Intimate Image Laws.  
<https://department.justice.wa.gov.au/I/intimate-image-s-law.aspx>
- [65] New website helps Australians stay safer online (2019). *eSafety commissioner*.  
<https://www.esafety.gov.au/about-us/newsroom/new-website-helps-australians-stay-safer-online>
- [66] APO (Analysis & Policy Observatory).(2018). Reviews of the 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 and the Online Content Scheme — discussion paper.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 (Australia)  
<https://apo.org.au/node/179846>

김혜진(Hyejin Kim)

[경력]



- 2006년 2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교육심리학 (임상심리학) (석사)
- 2007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장애인 재활학 (석사)
- 2009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철학 (석사)
- 2009년 5월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특수교육학 (박사)
- 2012년 8월 : 국회 입법자문위원
- 2012년 2월 : 국회 전 5급비서관
- 2010년 ~ 2020년 : 단국대, 백석대, 서경대 (외래교수)
- 2019년 6월 ~ 현재 : 글로벌 디지털 범죄 정책 연구소 대표 (Global Digital Sexual Crime Policy Research Institute)
- 2020년 ~ 현재 : EC(Europe Commission) - IDIH(International collaboration digital transformation health ageing): expert group -preventive care: 국제 협업 디지털 전환 고령화 유럽 커미션- 전문가 및 심사위원
- 관심분야 : Digital Sexual Crime, Digital Healthcare Policy, healthcare big data for early prediction of dementia. Senior Wellness IT, digital sex crime
- E-Mail : [hk2188@caa.columbia.edu](mailto:hk2188@caa.columbia.edu)